

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79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 . 18 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- 21세기 지식·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인재육성기금 조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출연(안 제3조)
- 나. 군 출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함(안 제5조)
- 다.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(안 제6조)
- 라. 출연금 운영상황 지도·감독(안 제8조)
- 마. 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4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
- 입법예고 : 고성군공고 제2003-54호(2003. 2. 13~3. 4), 특기할 사항 없음

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성군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출연금”이라 함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출연)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인재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4조(출연금의 사용) ①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, 위원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군이 출연한 기금(이자포함)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계획서 제출) ①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위원회의 회원회비와 기부금,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
제6조(기금결산서 제출)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 운영) ①군수가 지원하는 출연금 등의 규모, 사업계획서 및 기금관리 상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8조(지도감독)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) 군수는 위원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
2.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
4. 지도·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.